

입안서

1. 부서명 : 교무처

2. 명칭 : 중국 길림사범대학 공동복수학위제 운영내규 제정(안)
(관련학과 : 중국어과)

3. 제정사유

2012년 4월 25일 중국 길림사범대학과의 공동학위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 길림사범대학과의 공동 복수학위제 운영 내규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서울신학대학교와 중국 길림사범대학 학부 '2+2 복수학위제'에 관한 내용

- 1) 양교는 매년 5명이내의 '2+2' 복수학위제 학생을 선발 파견키로 하며, 각각 2년의 학습과정을 제공한다.
- 2) '2+2' 복수학위제 학생은 반드시 소속대학의 학적을 유지해야 하며, 소속대학에 학비를 납부한다. 단 상대 대학의 학비는 면제 받는다.
- 3) '2+2'복수학위제 학생은 관련 전공에서 2년 이상의 학습경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학생은 사회복지학 전공을 선택 학습하며, 한국학생은 중국어 전공을 학습한다.
- 4) 양교는 서로 상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서로 인정해주며, 졸업증서와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5) 학생을 파견 받은 대학은 '2+2'복수학위제 학생의 연수와 관련된 시설의 무상 사용을 허용한다.
- 6) 학생을 파견 받은 대학은 '2+2'복수학위제 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며, 본교 학생에 상응하는 기숙사비를 받는다.

중국 길림사범대학 공동복수학위제 운영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9조의 2에 의거 해외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조건) 이 내규는 본교와 중국 길림사범대학간 복수학위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선발된 교류학생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 내규는 양교 모두 상대대학에 파견할 교류학생이 선발되었을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지원자격) 복수학위과정의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지원 당시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② 지원 직전 총 3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2 이상인자
- ③ 출국 직전 학기 포함 4학기 이상 이수,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출국 가능
- ④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소유한 자 (신HSK 4급 이상)
- 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4조 (복수학위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복수학위를 신청 또는 이수할 수 없다.

- ① 편입학 및 전과한 자
-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

제5조 (신청시기 및 선발절차)

- ① 신청일자
 1. 신청 시기: 매년 12월 및 6월 (신청서류 제출)
 2. 파견 시기: 3월 및 9월
- ② 신청서류: 복수학위제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 교무처에 제출해 신청하여야 한다.
 1. 복수학위 이수신청서 1부 【제1호 서식】
 2. 학과장 추천서 1부
 3. 수학계획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5. 어학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 ③ 선발절차: 중국어과 학과장은 해당 전공교수들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②항의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의 자격요건, 수학능력 등에 관한 심사를 거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교류학생을 선발한다.

제6조 (수학기간 및 휴학) 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 중국어문학 • 현대중국어	2+2(년)
--------------------	--------

다만, 언어연수 및 학점의 부족 등으로 수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졸업예정일 2개월 전에 길림사범대학의 학장을 경유 총장의 동의를 얻어 【제2호 서식】의 복수학위 이수연장신청서를 원적대학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는 수학 중 1회(1학기)에 한하여 길림사범대학 학장을 경유 총장의 동의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협력대학에서의 휴학기간은 본교 휴학기간에 포함한다.(본교 휴학신청서 서식 참조)

③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는 졸업심사 시에 길림사범대학 총 수학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전공변경) 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가 길림사범대학 수학 중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길림사범대학의 학장을 경유 총장의 동의를 얻어 【제3호 서식】의 복수학위 전공변경신청서를 원적대학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중도포기) ①협력대학에서 연수하는 자는 수학 중 본교 총장의 승인 없이 자의로 수학을 포기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를 원하는 자는 길림사범대학의 학장을 경유 총장의 동의를 얻어 【제4호 서식】의 복수학위 중도포기서를 원적대학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중도 포기 시 원적대학의 학위 취득을 위하여 졸업 시까지 원적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플, 신앙수련회, 인문학강좌 등)

③ 중도 포기 시 직전학기까지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원적대학에서 모두 인정한다.(채플, 신앙수련회, 인문학 강좌 등 필수과목 포함)

제9조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 이수) ① 교류대학의 학기가 종료되었거나 수강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기한 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신청서를 본교 중국어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국어과 학과장은 전항에 의해 전달받은 서류를 학과회의를 거쳐 심사한 후 학점인정조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에서는 전항에 의해 제출된 학점인정조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 및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제③항의 학점인정은 매학기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인정과목은 길림사범대학에서 수강한 복수학위전공과 관련한 모든 과목을 인정한다. 본교 교육과정과 동일과목이거나 유사과목이라 하더라도 모두 별도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인정과목의 학점은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학점을 준용하여 인정한다.

⑦ 인정과목의 이수구분은 학과의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 과목으로 한다.

⑧ 취득 학점은 성적증명서에 “길림사범대학 교류이수학점”으로 표기하여 등재한다.

제10조 (성적관리) 복수학위를 이수하는 학생의 성적은 양교 간 협정에서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되, 특별히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기재한다.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F
평점	4.5	4.2	4.0	3.5	3.2	3.0	2.5	2.2	2.0	1.0	0
점수	95~100	92~94	90~91	85~89	82~84	80~81	75~79	72~74	70~71	60~69	0~59

제11조 (학위수여) 복수학위 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원적대학에서 요구하는 1, 2학년 과정의 학점을 이수한자.
- ②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3, 4학년 과정의 영역 및 학점을 이수한자.
- ③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제12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대학의 협의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내규의 개폐) 이 내규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제1호 서식】

복수학위제 이수신청서

대학명		학과명		성 별	남 , 여
교류대학명					
성 명		학 년		학 번	
총 취득학점		평균평점		HSK	급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HP					
특이사항					

※ 구비서류 : 복수학위제 이수신청서 1부, 학과장 추천서 1부, 수학계획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어학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상기 본인은 복수학위제 교류학생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 : (인)

보호자 : (인)

(보호자 연락처 :)

년 월 일

학과장	교무처장	총장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제2호 서식】

복수학위제 이수연장신청서

원적대학명		학과명			
성 명	(남, 여)	학 년		학 번	
총 취득학점		평점평균			
교류대학명 및 학과		전공			
전화번호		E-mail			
HP					
연장 사유	※ 구비서류 : 교류대학 동의서 1부				

상기 본인은 복수학위제 교류학생으로 위와 같이 이수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 : (인)

보호자 : (인)

(보호자 연락처 :)

년 월 일

학과장	교무처장	총장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제3호 서식】

복수학위제 전공변경신청서

원적대학명		학과명			
성 명	남, 여	학 년		학 번	
교류대학명 및 학과		원전공		전공변경	
길림사범대학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총 취득학점: 평점평균:				
전화번호		E-mail HP			
전공변경 사유					

※ 구비서류 : 교류대학 동의서 1부

상기 본인은 복수학위제 교류학생으로 위와 같이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 : (인)

보호자 : (인)

(보호자 연락처 :)

년 월 일

학과장	교무처장	총장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제4호 서식】

복수학위제 중도포기서

원적대학명		학과명			
성 명	(남, 여)	학 년		학 번	
총 취득학점		평점평균			
교류대학명 및 학과		전공			
전화번호		E-mail			
포기 사유	※ 구비서류 : 교류대학 동의서 1부				

상기 본인은 복수학위제 교류학생으로 위와 같이 복수학위제 중도포기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 : (인)

보호자 : (인)

(보호자 연락처 :)

년 월 일

지도교수	학과장	교무처장	총장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